

제 25-03-502856 호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1) 자동차가격조사·산정상태)

※자동차가격조사·산정은 매수인이 자동차가격조사·산정을 원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자동차 기본정보

(가)작성된 가격·적용되는 매수인이 자동차가격조사·산정을 원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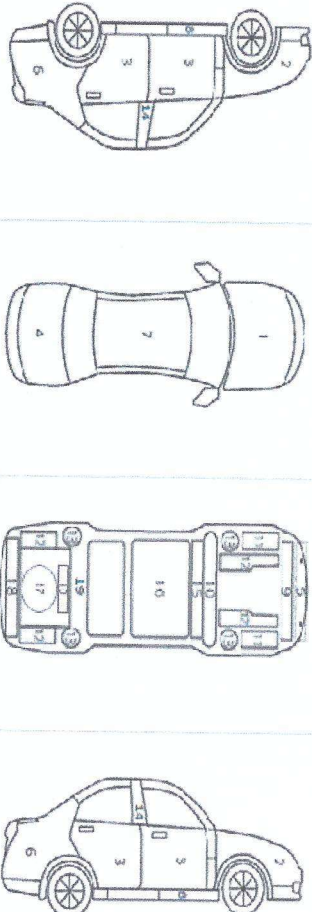
(1)차명	Mercedes-Benz GLS 450 d 4MATIC	(가)작성된 가격·적용되는 매수인이 자동차가격조사·산정을 원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2)자동차 등록번호	136고5733
(3)연식	2024	(4)검사용호기간	(세부모델 :)	
(5)최초등록일	2024.10.23	(7)변속기 종류	☒ 자동 ☐ 수동 ☐ 세미오토	
(6)차대번호	WINNF3DE2R8243268	☐ 무단변속기 ☐ 기타		
(8)사용연료	☐ 가솔린 ☐ 디젤 ☒ LPG	☐ 하이브리드 ☐ 전기 ☐ 수소전기 ☐ 기타	가격산정기준가격	0 만원
(9)원동기 형식	(10)보충유형	☐ 자기보충 ☒ 보충사분종(메리츠)		

세상, 주요옵션, 가격조사·산정액 및 특기사항은 매수인이 자동차가격조사·산정을 원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11)사용이력	상태	항목 / 해당부품	가격조사·산정액 및 특기사항
주행거리 및 계기상태	☒ 양호 ☐ 불량 ☒ 보통 ☐ 적음	현재 주행거리 5,601 Km	만원
차대번호표기	☒ 양호 ☐ 부식 ☐ 훼손(오손) ☐ 상이 ☐ 변조(변타) ☐ 도발		만원
배출가스	☐ 일산화탄소 ☐ 탄화수소 ☐ 매연	% PPM/ %	만원
타이어	☒ 양호 ☐ 있음 ☐ 적법 ☐ 불법 ☐ 침수 ☐ 파손	☐ 구조 ☐ 장치	만원
특정이력	☒ 없음 ☐ 있음	☐ 렌트 ☐ 영업용	만원
중도변경	☒ 없음 ☐ 있음	☐ 전제도색 ☐ 색상변경	만원
색상	☐ 무채색 ☐ 유채색	☐ 섀도 ☐ 내비게이션 ☐ 기타	만원
주요옵션	☐ 있음 ☒ 없음		만원
리콜대상	☒ 해당없음 ☐ 해당	리콜이행 ☐ 이행 ☐ 미이행	

사고·교환·수리 등 이력

(가)가격조사·산정액 및 특기사항은 매수인이 자동차가격조사·산정을 원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하단 항목은 승용차 기준이며, 기타 자동차는 승용차에 준하여 표시



(12)사고이력
(유/무)총 4 참조

☒ 있음 ☐ 없음

(13)교환,포관 등 이상 부위

단순수리

☒ 없음 ☐ 있음

가격조사·산정액 및 특기사항

외관부위	1.헬크 ☐ 1.후드 ☐ 2.프론트엔드 ☐ 3.도어 ☐ 4.트렁크크리드 ☐	2.헬크 ☐ 5.리어에이터 서포트(플트체결부분) ☐ 6.쿼터패널(리어패널) ☐ 7.루프패널 ☐ 8.사이드실패널 ☐ 9.오프엔드패널 ☐ 10.크로스멤버 ☐ 11.인사이드패널 ☐ 12.트렁크플로워 ☐ 13.리아패널 ☐	0만원
주요골격	B헬크 ☐ 12.사이드멤버 ☐ 13.휠하우스 ☐ 14.필라패널(☐ A, ☐ B, ☐ C) ☐ 15.페카지트페이 ☐ 16.폴로워패널 ☐	C헬크 ☐	

카메라지

자동차 세부상태 (가)가격조사·산정액 및 특기사항은 매수인이 자동차가격조사·산정을 원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항목 / 해당부품

상태

가격조사·산정액 및 특기사항

(14)주요장치	원동기	☒ 양호 ☐ 불량	
자기전단	변속기	☒ 양호 ☐ 불량	만 원
	작동상태(공회전)	☒ 양호 ☐ 불량	
	오일누유	☒ 없음 ☐ 미세누유 ☐ 누유	
	오일 유량	☒ 실린더 헤드 / 가스켓 ☐ 워터펌프 ☐ 리어에이터 ☐ 냉각수 수량	만 원
	냉각수누수	☒ 실린더 헤드 / 가스켓 ☐ 워터펌프 ☐ 리어에이터 ☐ 냉각수 수량	
	커먼레일	☒ 양호 ☐ 불량	
	자동변속기(AT)	☒ 양호 ☐ 미세누유 ☐ 누유	
	오일유량 및 상태	☒ 적정 ☐ 부족 ☐ 과다	
	작동상태(공회전)	☒ 양호 ☐ 불량	
	오일 누유	☐ 없음 ☐ 미세누유 ☐ 누유	
	기어변속장치	☐ 양호 ☐ 불량	
	오일유량 및 상태	☐ 적정 ☐ 부족 ☐ 과다	
	작동상태(공회전)	☐ 양호 ☐ 불량	
	클러치 애슬블리	☒ 양호 ☐ 불량	
	동속조인트	☒ 양호 ☐ 불량	
	추진축 및 배어링	☒ 양호 ☐ 불량	
	디퍼렌셜 기어	☒ 양호 ☐ 불량	
	동력조향 작동 오일 누유	☐ 없음 ☐ 미세누유 ☐ 누유	만 원
	스티어링 펌프	☒ 양호 ☐ 불량	
	스티어링 기어(MDPS포함)	☒ 양호 ☐ 불량	
	작동상태	☒ 양호 ☐ 불량	
	파워스티어링	☒ 양호 ☐ 불량	
	타이로드엔드 및 볼 조인트	☒ 양호 ☐ 불량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오일 누유	☒ 없음 ☐ 미세누유 ☐ 누유	
	브레이크 오일 누유	☒ 없음 ☐ 미세누유 ☐ 누유	
	배력장치 상태	☒ 양호 ☐ 불량	
	발전기 출력	☒ 양호 ☐ 불량	
	시동 모터	☒ 양호 ☐ 불량	
	와이퍼 모터 기능	☒ 양호 ☐ 불량	
	실내승용 모터	☒ 양호 ☐ 불량	
	리아이더 팬 모터	☒ 양호 ☐ 불량	
	윈도우 모터	☒ 양호 ☐ 불량	
	충전구 절연 상태	☒ 양호 ☐ 불량	
	구동축전지 격리 상태	☒ 양호 ☐ 불량	
	고전원 전기장치	☒ 양호 ☐ 불량	
	연료	☒ 양호 ☐ 불량	
	연료누출(P기스포함)	☒ 없음 ☐ 있음	만 원

자동차 기타정보 (이 항목은 매수인이 자동차가격조사·산정을 원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외장	☐ 양호 ☐ 불량	내장	☐ 양호 ☐ 불량
광택	☐ 양호 ☐ 불량	플라스틱	☐ 양호 ☐ 불량
휠	☐ 양호 ☐ 불량	운전석	☐ 전 ☐ 후 / 동변석 ☐ 전 ☐ 후 ☐ 응금
타이어	☐ 양호 ☐ 불량	운전석	☐ 전 ☐ 후 / 동변석 ☐ 전 ☐ 후 ☐ 응금
유리	☐ 양호 ☐ 불량		
기타	☐ 양호 ☐ 불량		
기타	☐ 양호 ☐ 불량		

0만원

최종 가격 조사·신청 금액		이이이이이만원
(5)특기사항		이 가격조사·신청가격은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격을 바탕으로 한 기준가격과 () 기술사회, () 한국자동차전문보험협회 기준서를 적용하였음
및점검자의견	성능·상태점검자 가격·조사신청자	중고차 특성상 부분적인 미세누유 및 편금, 도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 의 사 함

※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의 보증에 관한 사항 등

1. 자동차 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특부(가격조사·신청 부분 제외)에 기재된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거짓 또는 오류가 있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내용을 제공하여 아래의 보증기간 또는 보증거리 이내에 자동차의 실제 성능·상태가 다른 경우, 자동차매매업자는 매수인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게 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매수인이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기입한 책임보험 등을 통해 별도로 배상받는 경우는 제외)
· 자동차인도일부터 보증기간은 ()일, 보증거리() 킬로미터로 합니다.
(보증기간은 30일 이상, 보증거리는 2천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
·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특부를 매수인에게 고지할 때 현재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국토교통부 고시를 첨부하여 고지하여야 합니다. 등 보증범위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의 리콜에 관한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3365(www.car365.go.kr)에서 판매물 조회 및 정비이력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3365 > 자동차 구매물조회 > 차량번호 입력
· 자동차3365 > 자동차 이력조회 > 매매물차량조회 > 자동차등록번호 조회
2.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나 점검한 내용을 거짓으로 고지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거짓으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거나 실제 점검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공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9호의 제5호제1항에 따라 1차 시정명지 30일, 2차 시정명지 90일, 3차시정명지 폐쇄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4. (1)사고이력 인정은 사고로 자동차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체가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쿼터패널, 록퍼패널, 사이드시패널 부위는 절단 용접 시에만 사고로 포기합니다.
(후드, 포문트랜더, 도어, 트렁크시드 등 외관 부위 및 범퍼에 대한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은 단순수리로서 사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6.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특부는 해당 기록부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120일 이내에 이루어진 자동차성능·상태점검으로 한정합니다
7. 세그먼트(세그먼트) : 해당부위에 오일(냉각수)이 넘치는 정도로서 부품 노후로 인한 현상
· 누유(누유) : 해당부위에서 오일(냉각수)이 넘쳐서 떨어지는 상태
· 부식 : 차량하부 및 외관의 금속표면이 화학반응에 의해 금속이 아닌 산성으로 산식되어 가는 현상(단순히 녹이 있는 상태는 제외합니다)
· 점수 : 자동차의 휠축기, 변속기 등 주요장치 일부가 휠에 점진 흔적이 있는 상태
· 현재 주행거리 :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당시 해당 차량 주행거리계의 주행거리를 기록하고 기록한 주행거리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조직원(자동차관리장보시스템)으로부터 받은 주행거리(주행거리계 교체 정보 포함)보다 적은 경우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란에 이를 적어야 합니다.

※ 자동차가격조사·신청의 보증에 관한 사항 등

8. 가격조사·신청자는 아래의 보증기간 또는 보증거리 이내에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특부(가격조사·신청 부분 한정)에 적힌 내용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계약 또는 판매행위에 따라 매수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자동차인도일로부터 보증기간은(30일, 보증거리(2000킬로미터로 합니다.
(보증기간은 30일 이상, 보증거리는 2천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중 도래한 것을 적용합니다.)
9. 자동차매매업자는 매수인이 가격조사·신청을 원할 경우 가격조사·신청자가 해당 자동차 가격을 조사·신청하여 결과를 이 서식에 적도록 한 후, 반드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매매업자는 가격조사·신청자에게 가격조사·신청을 의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가격조사·신청 비용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10. 자동차가격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조사·신청하되, 기준서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4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사회에서 발행한 기준서를,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한국자동차전문보험협회에서 발행한 기준서를 각각 적용하여야 하며, 기준가격과 기준서는 산업일반 기준 가장 최근에 적용합니다.
11. 특기사항란은 가격조사·신청자의 자동차성능·상태에 대한 견해가 성능·상태점검자의 견해와 다를 경우 표시합니다.

자동차가격 조사·신청 이란

※ "가격조사·신청"은 소비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고차 가격의 적절성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발행에 의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전문 가격조사·신청인이 객관적으로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격조사·신청"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에 따른 서비스이며, 가격조사·신청 결과는 중고차가 거래단위에 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고 소비자의 구매여부 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점검 장면 촬영 사진



서 명

[자동차관리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20조 제123조의5에 따라
[[중고자동차성능·상태]를 점검, [] [자동차가격조사·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08월 06일

자동차성능·상태 점검자
자동차가격조사·신청자
자동차성능·상태 고지자

한양자동차공업사(주)수리(인)
(서명 또는 인)
리식보험무다(이)트(가) 자동차매매업소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위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자동차가격조사·신청] 선택)를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매수인 (서명 또는 인)